

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

등록원부의 세부 기재사항(제5조제3항 관련)

1. 등록원부(갑구)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.
 - 가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
 - 나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종류, 명칭
 - 다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보관장소
 - 라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제원(諸元: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총톤수, 최대출력, 승선 정원, 길이, 너비, 깊이를 말한다)
 - 마. 동력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의 종류, 형식, 수
 - 바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제조연도 및 제조국가, 운항구역, 용도
 - 사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최초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
 - 아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최종 소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
 - 자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공동소유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, 지분비율
 - 차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연원일, 등록내용 및 그 내용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
2. 등록원부(을구)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.
 - 가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자
 - 나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 설정자
 - 다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채무자
 - 라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채권가액, 저당권설정일, 저당권말소일
 - 마. 공동으로 저당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
 - 바.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의 설정·변경·이전 또는 말소에 관한 세부 사항